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2
----------	----

제출년월일 : 1996 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농어촌개발, 사회교육시설 및 임대주택 지원등 국가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축소 조정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 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세의 면제 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 범위에서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 대상자중 일부만 제외하던 것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 면제 (안 제2조 제3항)
- 농가의 농의소득원 지원확대를 위해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18조 제1항 제2호)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면적의 초과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19조 제1항)

○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 노인복지법 제19조의3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6조의2)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증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안 제7조 제7호)
- 임대사업자등이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안 제14조 제2항)

○ 검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경감을 축소 조정

- 부동산등기 신청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30%를 경감하던 것을 20%로 축소 (안 제20조 제1호, 제2호)

□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 자료 : 별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4조중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받은 자 및"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제출한'을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과세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과세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